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8
----------	----

2014년 9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I .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14. 9. 4.
2.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3. 회부일자 : 2014. 9. 25
4. 상 정 : 서울특별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4. 9. 26)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원안 발의·의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14. 9. 29)
 - 안건상정, 원안 발의·의결

II . 제안설명 (기획조정실장 류경기)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 서울시 감채기금 자원중 '1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060억원 신규발생에 따라
-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표 2-1〉 감채기금의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감 (A-B)	증	감	사	유
수 입 합 계		124,731	18,731	106,000				
	전 입 금	115,240	9,240	106,000	'1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			
	이 자 수 입	241	241	-				
	예 치 금 회 수	9,250	9,250	-				
지 출 합 계		124,731	18,731	106,000				
	예수원리금 상환	115,240	9,240	106,00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17	417	-				
	일 반 운 영 비	50	50	-				
	예 치 금	9,024	9,024	-				

Ⅲ. 검토보고 (전문위원 엄지운)

- 동 안전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2항1)의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 당초 감채기금의 지출항목인 예수금원리금상환은 9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출항목중 예수원리금 상환(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60억원을 전입할 경우, 주요지출항목이 당초보다 11.5배 증가되어 관련법규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아울러 동 기금의 지출항목에 1,060억원을 전입하려는 것은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2)에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동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는 바

-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 2) 「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단, 일반회계의 출연금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 이상으로 한다.
 - 가. 「지방자치법」 제173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 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 다. 기타 법규로 정한 의무적 지출액

○ 201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2,941억 7,100만원)에 대해 관련법령³⁾에 따라 이미 지방채⁴⁾ 상환에 1,000억원을 집행⁵⁾한 바 있고,

- 동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에도 재정투융자기금 차입분(8,400억원)에 대한 원금을 조기상환 하고자 지출항목에 1,060억원을 전입하려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이 궁극적으로 채무상환을 통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안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에 근거하여 결산상 잉여금을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감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도 법정정산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의 50% 이상을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 기 상환된 지방채(1,000억원)와 동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지출항목(1,060억원)을 합할 경우, '13회계연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2,941억 7,1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바

○ 세입여건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세출재원의 한정성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3)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4) 2013년도 영유아무상보육 관련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지방채

※ 차입규모 : 2,000억원, (금융기관차입, 금리 3.16%)

5)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366 (2014. 5.19), “서울시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

재정건전성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할지 시민안전 등의 재정지출을 우선시 할지 재원배분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IV. 심사결과 : 원안가결

V.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VI. 계수조정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첨부 :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부. 끝.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68
----------	----

제출년월일 : 2014년 9월 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감채기금 재원중 '1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106,000백만원 신규발생에 따라

나.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사업 추진을 위하여 '14년도 감채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수입 및 지출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정계획 (A)	당초계획 (B)	증 감 (A - B)	비 고
수 입 합 계	124,731	18,731	106,000	
전입금	115,240	9,240	106,000	'13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전입
이자수입	241	241	-	
예치금 회수	9,250	9,250	-	
지 출 합 계	124,731	18,731	106,000	
예수원리금 상환	115,240	9,240	106,000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417	417	-	
일반운영비	50	50	-	
예치금	9,024	9,024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협의 완료